



#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이 소 영

- 01 I. 논의의 배경
- 02 II. 우리나라 현행 법률 및 판례
- 07 III. 법무부와 국회의 대응 현황
- 09 IV. 해외 입법례
- 18 V. 규제 논의 과정상 고려사항

□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흉기를 준비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처벌이 곤란할 수 있음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이 규정되어 있음

□ 법무부는 공중협박죄 신설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가 침해되는 법익과 비교할 때 과연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와 기존 법률로도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①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② 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③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I. 논의의 배경

지난 8월 3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국민이 느끼는 공포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면서 흉기 이용 강력 범죄자 6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살인예고글 게시자는 301명이었다.<sup>1)</sup>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히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로 구속기소하고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해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sup>2)</sup>

이와 같이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고, 법무부와 국회의 대응 현황 및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후 향후 규제 논의 과정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이강준,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2개월…흉기범 681명, 살인예고 게시 301명 검거」, 『머니투데이』, 2023. 10. 4.(최종 검색일 : 2023. 10. 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0413170371526>>.

2) 김철웅, 「‘살인예고 글’ 20대 4300만원 손배소…정부, 줄줄이 책임 묻는다」, 『중앙일보』, 2021. 9. 19.(최종 검색일 : 2023. 10. 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609>>.

## II. 우리나라 현행 법률 및 판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규율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상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살인 예비·음모죄<sup>3)</sup>

형법은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형법」 제28조) 음모 또는 예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모·예비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예비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미리 형벌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사정책적 근거에서 예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형법도 이러한 이유에서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와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그 미수범을 벌할 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살인 예비·음모죄를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豫備)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비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예비는 무한정·무정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권총이나 칼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거나 행동자금을 교부하는 경우<sup>4)</sup> 또는 살해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한 경우<sup>5)</sup>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은, 위와 같

3) 김대휘·김신, 『주석형법 각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pp.285-287.

4) 대법원 1950. 4. 18. 선고 4283형상10 판결.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은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예비는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지 않고 범죄실행을 위한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예비는 단순한 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를 객관화할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실행하지 않을 것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sup>6)</sup>

음모(陰謀)란 2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성립하는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루지 않은 이상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명이나 교환으로는 음모라고 할 수 없다. 음모도 실행의 착수 이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예비와 동일하며, 범죄수행에 대한 위협성의 정도도 예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살인죄, 존속살해죄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록 시기는 미정이라든가 적어도 살해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정 하에서의 준비행위만이 살인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sup>7)</sup> 대법원도,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59. 7. 11. 선고 4292형상154 판결).<sup>8)</sup> 한편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sup>9)</sup>

이와 같이 예고된 범죄가 살인이라도 「형법」 제255조, 제250조에 따른 살인예비죄는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을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미필적 인식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공범을 모집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 준비행위 없이 단순히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 살인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7)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제8판 증보판)』, 박영사, 2016, p.33.

8)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08 판결, 대법원 1959. 9. 1. 선고 4292형상387 판결 등이 있음.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2.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은 협박죄를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의 의미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sup>10)</sup> 협박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박의 객체는 해악의 고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sup>11)</sup>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협박행위에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로 되어야 하고, 협박행위의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sup>12)</sup>

협박죄의 실행행위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명예, 신용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형법은 협박죄의 침해되는 법익의 향유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박의 객체인 피해자 본인과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제3자와의 관계,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up>13)</sup>

1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1)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6, p.627.

12)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6, pp.627-628.

1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sup>14)</sup> 판례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그 친숙의 정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15)</sup>

이처럼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협박의 개념상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게시글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해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를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偽計)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이나 수사과정 또는 관청의 인·허가처분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기재,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법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며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sup>16)</sup>

14)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15)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16) 김대휘·김신, 『주석형법 각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p.588.

판례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허위진술<sup>17)</sup> 또는 허위신고<sup>18)</sup>를 하는 것만으로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하거나<sup>19)</sup>, ②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sup>20)</sup>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한다는 고의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sup>21)</sup> 대법원은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판례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또한 곤란할 수 있다.

#### 4. 소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흥기를 준비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17)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도1974 판결 등.

18)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841 판결.

1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2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21)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등.

22)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841 판결.



### Ⅲ. 법무부와 국회의 대응 현황

최근 일련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국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무부의 대책

법무부는 2023. 8. 22. 당정협의회에서 “묻지마식 강력범죄 대응·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sup>23)</sup>, ②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sup>24)</sup>, ③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sup>25)</sup>, ④ 기존 ‘강력범죄 대응시스템’ 강화<sup>26)</sup>, 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sup>27)</sup>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 가능한 법률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를 규율하려는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먼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038호, 2023. 8. 28.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3건 발의되었다.

①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안번호 제2123831호, 2023. 8. 16.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23)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관계없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 추진 예정임(2023. 8. 14. 입법예고).

24)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예정임.

25)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 예정임.

26) 경찰과 초동수사부터 영장 청구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범의학 자문 등 심리 정밀분석을 통해 소시오패스 등의 징후를 조기 포착하며, 피해자 또는 유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공소유지를 강화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 예정임.

27)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 예정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의안번호 제2123835호, 2023. 8. 16.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③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의안번호 제2124004호, 2023. 8. 24.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한편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034호, 2023. 8. 28. 정우택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1 |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관련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법률안	발의일	의안번호	대표발의인	주요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28.	제2124038호	박대출 의원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16.	제2123831호	김영식 의원	·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금지를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8.16.	제2123835호	홍석준 의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8.24.	제2124004호	김용판 의원	·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28.	제2124034호	정우택 의원	·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kms.assembly.go.kr/bill/main.do>)(2023. 11. 9. 기준)

## IV. 해외 입법례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독일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형법(StGB)」은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장 아래 제126조에서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를 규정하면서 이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 독일 형법

#####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sup>28)</sup>

-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5a조제2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요죄
  2. 성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범죄 중 제177조제4항부터 제8항 또는 제178조의 죄
  3.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집단살해(「국제형사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사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4. 위협한 상해죄(제224조) 또는 중상해죄(제226조)
  5.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제3항제2문, 제232a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32b조제3항 또는 제4항, 제233a조제3항 또는 제4항, 제234조, 제234a조, 제239a조 또는 제239b조의 죄
  6.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또는 제255조)
  7. 공공위험의 중죄 중 제306조부터 제306c조까지,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 제30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3조, 제314조 및 제315조제3항, 제315b조제3항, 제316a조제1항 및 제3항, 제316c조제1항과 제3항 및 제318조제3항 및 제4항의 죄
  8. 공공위험의 경죄 중 제309조제6항, 제311조제1항, 제316b조제1항, 제317조제1항 또는 제318조제1항의 죄
-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28) § 126 Störung des öffentlichen Friedens durch Androhung von Straftaten

(1)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1. einen der in § 125a Satz 2 Nr. 1 bis 4 bezeichneten Fälle des Landfriedensbruchs,
2. eine Straftat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in den Fällen des § 177 Absatz 4 bis 8 oder des § 178,
3. einen Mord (§ 211), Totschlag (§ 212) oder Völkermord (§ 6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 7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 Kriegsverbrechen (§§ 8, 9, 10, 11 oder 12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4. eine gefährliche Körperverletzung (§ 224) oder eine schwere Körperverletzung (§ 226),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① 제125a조제2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요죄, ② 성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범죄 중 제177조제4항부터 제8항 또는 제178조의 죄, ③ 모살(謀殺), 고살(故殺),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④ 위험한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 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중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 ⑥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 ⑦ 공공위험의 중죄 중 일정한 범죄, ⑧ 공공위험의 경죄 중 일정한 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제1항) 이러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제2항)를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StGB)」 제126조의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와 관련한 독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에 무차별 살인 예고를 게시한 사건<sup>29)</sup>에서, 독일 법원은 페이스북에 살인 예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공공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독일 국민의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하고 적어도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AG Wolfratshausen, Urteil vom 25.3.2013 - 2 Cs 11 Js 27699/12).<sup>30)</sup> 이러한 해석 하에 해당 페이스북은 25~35명으로 구성된 소수의 지인들만이 읽을 수 있어서 공공의 평화를 방해하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독일 법원에서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수 이상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eine Straftat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in den Fällen des § 232 Absatz 3 Satz 2, des § 232a Absatz 3, 4 oder 5, des § 232b Absatz 3 oder 4, des § 233a Absatz 3 oder 4, jeweils soweit es sich um Verbrechen handelt, der §§ 234, 234a, 239a oder 239b,

6. einen Raub oder eine räuberische Erpressung (§§ 249 bis 251 oder 255),

7. ein gemeingefährliches Verbrechen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oder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3, des § 309 Abs. 1 bis 4, der §§ 313, 314 oder 315 Abs. 3, des § 315b Abs. 3, des § 316a Abs. 1 oder 3, des § 316c Abs. 1 oder 3 oder des § 318 Abs. 3 oder 4 oder

8. ein gemeingefährliches Vergehen in den Fällen des § 309 Abs. 6, des § 311 Abs. 1, des § 316b Abs. 1, des § 317 Abs. 1 oder des § 318 Abs. 1

andro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wider besseres Wissen vortäuscht, die Verwirklichung einer der in Absatz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en stehe bevor.

29) 피고인이 탄약으로 무장하고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을 무자비하게 처단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읽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임.

30) <https://www.ra-kotz.de/amoklauf-facebook.htm>(최종 검색일 : 2023. 10. 27.).

## 2. 미국

### 가. 연방

미국 연방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18 U.S.C. 제 875조제c항).

미국 「연방 법률」 18 U.S.C. 제875조제c항은 사람을 납치하겠다는 위협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포함된 통신문을 주(州) 간 또는 외국 상업에서 전송하는 자를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연방 법률

##### 18 U.S.C. §875 Interstate communications

- (a) Whoever transmit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communication containing any demand or request for a ransom or reward for the release of any kidnapped person,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 (b) Whoever, with intent to extort from an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any money or other thing of value, transmit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communication containing any threat to kidnap any person or any threat to injure the person of another,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 (c) Whoever transmit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communication containing any threat to kidnap any person or any threat to injure the person of another,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oth.
- (d) Whoever, with intent to extort from an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any money or other thing of value, transmit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communication containing any threat to injure the property or reputation of the addressee or of another or the reputation of a deceased person or any threat to accuse the addressee or any other person of a crime,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하여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충기를 난사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허위 협박(Hoax Threats)’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Think Before You Post”(게시하기 전에 생각해보시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협박의 글을 게시한 경우 10대 청소년의 경우도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sup>31)</sup>

미국 「연방 법률」상의 규정이 「독일 형법(StGB)」 제126조과 다른 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위협이 포함된 글이 전송(transmit)만 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방이

31) <https://www.fbi.gov/news/stories/hoax-threats-awareness-100518>(최종 검색일 : 2023. 10. 27.).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 나. 주(州)

### (1) 뉴욕주

「뉴욕주 형법(NY Penal Law)」 제490.20조에서는 공중 일반을 협박할 의도로 살인, 납치 등 특정 범죄를 범할 것임을 위협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합리적 기대나 공포를 불러일으킨 경우를 테러협박죄로 규정하여 D급 중범죄(7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하고 있다.

#### 뉴욕주 형법(NY Penal Law)

##### §490.20 Making a terroristic threat.<sup>32)</sup>

1. A person is guilty of making a terroristic threat when with intent to intimidate or coerce a civilian population, influence the policy of a unit of government by intimidation or coercion, or affect the conduct of a unit of government by murder, assassination or kidnapping, he or she threatens to commit or cause to be committed a specified offense and thereby causes a reasonable expectation or fear of the imminent commission of such offense.
2. It shall be no defense to a prosecution pursuant to this section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 or capability of committing the specified offense or that the threat was not made to a person who was a subject thereof.

Making a terroristic threat is a class D felony.

※D급 중범죄(Class D Felony) : 7년 이하의 징역<sup>33)</sup>

### (2)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형법(CALIFORNIA PENAL CODE)」 제422조는 폭력, 상해, 살인의 위협이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할 의도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등의 범죄 위협을 규제하고 있다.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장치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이 실제로 실행할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한 의도로써 타인에게 사망 또는 큰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고의로 위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 32) 뉴욕주 형법 §490.20 테러협박

1. 공중 일반을 겁먹게 하거나 협박할 의도,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살인, 암살, 또는 납치를 통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특정 범죄(살인, 방화, 납치 등)를 범하거나 범해지도록 할 것임을 위협함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한 합리적 기대나 임박한 실행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테러협박죄에 처한다.

2. 이 조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실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상자에게 위협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죄는 D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33) NY Penal Law SECTION 70.00. 2. (d).

**캘리포니아주 형법(CALIFORNIA PENAL CODE)**

**Art. 422.**

-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immediate family" means any spouse, whether by marriage or not, parent, child, any person related by consanguinity or affinity within the second degree, or any other person who regularly resides in the household, or who, within the prior six months, regularly resided in the household.
- (c)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elephones, cellular telephones, computers, video recorders, fax machines, or pagers.

(3)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형법(Code of Virginia Title 18.2)」 제18.2-60조에서는 민간인 일반을 협박할 의도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5급 중범죄(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형법(Code of Virginia Title 18.2)**

§ 18.2-60. Threats of death or bodily injury to a person or member of his family; threats of death or bodily injury to persons on school property; threats of death or bodily injury to health care providers; penalty.

A 3. Any person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communicates a threat in writing, including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mmunication producing a visual or electronic message, to another to kill or to do serious bodily injury to any other person and makes such threat with the intent to (i) intimidate a civilian population at large; (ii) influence the conduct or activities of a government, includ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locality, through intimidation; or (iii) compel the emergency evacuation, or avoidance, of any place of assembly, any building or other structure, or any means of mass transportation is guilty of a Class 5 felony. Any person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who commits such offense is guilty of a Class 1 misdemeanor.<sup>34)</sup>

※5급 중범죄(Class 5 felony) :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sup>35)</sup>

## (4) 텍사스주

「텍사스주 형법(Texas Penal Code)」 제22.07조에서는 상당수의 대중을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테러협박죄로 규정하여 3급 중범죄(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고 있다.

**텍사스주 형법(Texas Penal Code)****Sec. 22.07. TERRORISTIC THREAT**

(a) A person commits an offense if he threatens to commit any offense involving violence to any person or property with intent to:

- (1) cause a reaction of any type to his threat by an official or volunteer agency organized to deal with emergencies;
- (2) place any person in fear of imminent serious bodily injury;
- (3) prevent or interrupt the occupation or use of a building, room, place of assembly, place to which the public has access, place of employment or occupation, aircraft, automobile, or other form of conveyance, or other public place;
- (4) cause impairment or interruption of public communications,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water, gas, or power supply or other public service;
- (5) place the public or a substantial group of the public in fear of serious bodily injury; or
- (6) influence the conduct or activities of a branch or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state.

(e) An offense under Subsection (a)(4), (a)(5), or (a)(6) is a felony of the third degree.

※3급 중범죄(Felony of the third degree)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sup>36)</sup>

## (5) 펜실베이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 형법(Pennsylvania Statutes Title 18)」 제2706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의도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중시설에서 대피를 유발하거나 기타 심각한 공공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위협하는 경우를 테러협박죄로 규정하고 1급 경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급 중범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달러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고 있다.

**34) 버지니아주 형법 § 18.2-60.**

A. 3. 18세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서면(시각적 또는 전자적 메시지를 생성하는 전자적 전송 통신 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i) 민간인 일반을 협박할 의도로 그러한 협박을 하는 경우; (ii) 협박을 통해 미국, 주 또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행동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iii) 집회 장소,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또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긴급 대피 또는 회피를 강요하는 경우 5급 중범죄로 처벌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러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1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35) Code of Virginia Title 18.2 §18.2-10. (e).

36) Texas Penal Code Sec. 12.34. (a), (b).



**펜실베이니아주 형법(Pennsylvania Statutes Title 18)**

**§ 2706. Terroristic threats**

- (a) Offense defined.--A person commits the crime of terroristic threats if the person communicat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 threat to:
- (1) commit any crime of violence with intent to terrorize another;
  - (2) cause evacuation of a building, place of assembly or fac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or
  - (3) otherwise cause serious public inconvenience, or cause terror or serious public inconvenience with reckless disregard of the risk of causing such terror or inconvenience.
- (b) Restitution.--A person convicted of violating this section shall, in addition to any other sentence imposed or restitution ordered under 42 Pa.C.S. § 9721(c) (relating to sentencing generally), be sentenced to pay restitution in an amount equal to the cost of the evacu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ire and police response;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and transportation of an individual from the building, place of assembly or facility.
- (c) Preservation of private remedies.--No judgment or order of restitution shall debar a person, by appropriate action, to recover from the offender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provided that any civil award shall be reduced by the amount paid under the criminal judgment.
- (d) Grading.--An offense under subsection (a) constitutes a misdemeanor of the first degree unless the threat causes the occupants of the building, place of assembly or fac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to be diverted from their normal or customary operations, in which case the offense constitutes a felony of the third degree.
- (e) Definition.--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communicates” means conveys in person or by written or electronic means, including telephone, electronic mail, Internet, facsimile, telex and similar transmissions.

- ※ 1급 경범죄(Misdemeanor of the first degree)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sup>37)</sup>
- ※ 3급 중범죄(Felony of the third degree)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달러 이하의 벌금<sup>38)</sup>

###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장에 대중협박죄를 규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75조제1항은 생명, 건강, 신체의 불가침성,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Pennsylvania Statutes Title 18 §106. (b)(6), §1101. (4).

38) Pennsylvania Statutes Title 18 §106. (b)(4), §1101. (3).

**오스트리아 형법****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제275조(대중협박)<sup>39)</sup>**

- ① 생명, 건강, 신체의 불가침성,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지하는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공공생활의 중대한 장애 또는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한 자
  2. 경제생활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자
  3. 한 사람의 사망 또는 다수인의 중상해(제84조 제1항)를 초래하거나 범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을 곤경에 빠지게 한 자
- ③ 그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스위스**

스위스는 「형법」 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편에 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조성죄가 규정되어 있다.

「스위스 형법」 제2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공포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스위스 형법****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제258조(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조성)<sup>40)</sup>**

누구든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공포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9) Landzwang**

§ 275. (1) Wer die Bevölkerung oder einen großen Personenkreis durch eine Drohung mit einem Angriff auf Leben, Gesundheit, körperliche Unversehrtheit, Freiheit oder Vermögen in Furcht und Unruhe versetzt,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zu bestrafen.

(2) Hat die Tat

1. eine schwere oder längere Zeit anhaltende Störung des öffentlichen Lebens,
2. eine schwere Schädigung des Wirtschaftslebens oder
3. den Tod eines Menschen oder die schwere Körperverletzung (§ 84 Abs. 1) einer größeren Zahl von Menschen zur Folge oder sind durch die Tat viele Menschen in Not versetzt worden,

so ist der Täter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bestrafen.

(3) Hat die Tat aber den Tod einer größeren Zahl von Menschen nach sich gezogen, so ist der Täter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bis zu zehn Jahren zu bestrafen.

**40) Schreckung der Bevölkerung**

Art. 258 Wer die Bevölkerung durch Androhen oder Vorspiegeln einer Gefahr für Leib, Leben oder Eigentum in Schrecken ver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bestraft.

## 5.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 질서 및 안전의 보호 장에 허위 경보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노르웨이 형법」 제187조는 사람의 생명, 건강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일반적인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르웨이 형법

#### 제20장 공공의 평온, 질서 및 안전의 보호

#### 제187조(허위 경보)<sup>41)</sup>

- ① 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허위의 신고, 근거 없는 구조 요청, 조난 신호의 오용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다음의 결과를 초래한 때에는 벌금형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a. 경찰, 소방관, 구급차, 의사 또는 무장한 군인의 출동
  - b. 주 구조 센터 또는 지역 구조 센터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호출
  - c. 다수의 사람들을 집합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
- ②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일반적인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또한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41) § 187. Falsk alarm

1. Med bot eller fengsel inntil 6 måneder straffes den som ved en uriktig melding, et ugrunnet rop om hjelp, misbruk av nødsignal eller liknende forsettlig eller grovt uaktsomt volder
  - a. utrykning av politi, brannvesen, ambulanse, lege eller forsvaret,
  - b. utrykning som skjer etter anmodning fra en hovedredningssentral eller lokal redningssentral,
  - c. sammenstimling av eller skrekk blant et større antall mennesker.
2. På samme måte straffes den som gir falske opplysninger som er skikket til å fremkalle frykt for noens liv eller helse eller forstyrre den alminnelige ro og orden.

## V. 규제 논의 과정상 고려사항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있는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흥기난동 사건 이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추궁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공중협박죄 신설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 신설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범죄화를 통한 형법의 개입(형사제재의 활용)은 타법(他法)이 그 보호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sup>42)</sup>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제재수단을 구사하므로 타법의 금지와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여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sup>43)</sup> 따라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침해되는 법익과 비교할 때 과연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지, 기존 법률로도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그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논의도 필요하다. 독일의 판례와 같이 일정한 수 이상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범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연방 법률 입법례와 같이 위협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당면하고 있는 법현실이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야 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법인 「형법」에 규정할 것인지, 특별법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4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10판)』, 박영사, 2019, p.7.

43)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p.8.

야 할 것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특별법 규정 때문에 일반법이 사문화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특별법 규정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익 침해의 정도, 다른 비슷한 범죄 유형의 법정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휩쓸려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 신설 논의 과정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 적용 범위, 처벌의 수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 김대휘·김신, 『주석형법 각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 김대휘·김신, 『주석형법 각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제8판 증보판)』, 박영사, 2016.
- \*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6.
- \*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10판)』, 박영사, 2019.
- \* 법무부, 「문지마식 강력범죄 대응·관리 강화 방안」, 『당정협의회 안건 보고』, 2023.
-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독일 법무부 법령 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index.html>>.
- \* 미국 연방 법률  
<<https://codes.findlaw.com/us/title-18-crimes-and-criminal-procedure/>>.
- \* 뉴욕주 형법<<https://ypdcrime.com/penal.law/>>.
- \* 캘리포니아주 형법<<https://codes.findlaw.com/ca/penal-code/>>.
- \* 버지니아주 형법<<https://law.lis.virginia.gov/vacodeupdates/title18.2/>>.
- \* 텍사스주 형법<<https://txpenalcode.com/>>.
- \* 펜실베이니아주 형법  
<<https://codes.findlaw.com/pa/title-18-pacsa-crimes-and-offenses/>>.
- \* 오스트리아 연방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296>>.
- \* 스위스 법령포털  
<[https://www.fedlex.admin.ch/eli/cc/54/757\\_781\\_799/de](https://www.fedlex.admin.ch/eli/cc/54/757_781_799/de)>.
- \* 노르웨이 형법  
<[https://lovdata.no/dokument/NLE/lov/2005-05-20-28/\\*&#x2a;](https://lovdata.no/dokument/NLE/lov/2005-05-20-28/*&#x2a;)>.

## R E P O R T · L I S T

##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05호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2023.11.14.	김도희·형혁규 김예경·박명희·심성은
제304호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 -	2023.11.7.	구세주
제303호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2023.11.2.	이덕란
제302호	포털뉴스의 평가와 영향: 실증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2023.10.27.	최진응
제301호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2023.10.19.	김광현
제300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조건과 효과에 대한 검토	2023.8.10.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 T/F
제29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3.8.9.	유재국
제298호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3.7.28.	이예지 황성필
제297호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비교	2023.7.24.	배재현
제296호	선출직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2023.7.21.	하혜영
제295호	만화·웹툰 산업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2023.6.5.	박제웅
제294호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	2023.5.31.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 T/F
제293호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정치발전제도개선 TF)	2023.5.25.	김선화 오창룡
제292호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2023.5.22.	하혜영
제291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2023.5.10.	이덕난 유지연
제290호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2023.5.10.	허민숙
제289호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편의점 유리벽의 '불투명 시트지' 논란을 중심으로 -	2023.5.8.	문심명
제288호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2023.5.2.	유영국



**NARS** 현안분석 제306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1613-14  
ISSN 2586-565X

